



이것 만은 유의하세요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2005년 이후 출생)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 중 「미성년 자녀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만 19세(2004년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소화메뉴 중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에서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 자료를 연말정산에 사용하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사칭 스미싱, 파밍 주의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영수증 발급기관) 외에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